

● 제268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16. 6. 21.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1180

I. 결산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일 : 2016. 5. 10.
- 회부일 : 2015. 5. 13.

II. 결산현황

1. 총괄

-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총괄은
 - 세입예산현액 2,70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54만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195억 2,523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8억 6,71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5,808만원임.

2. 세입 결산

-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2,705만원 보다 726만원이 증액된 3,43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3,154만원(116.6%)이 수납되었음.
- 주요 세입 현황은
 -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2,577만원으로, 사용료수입(현금인출기 청사사용료), 수수료수입(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등이며, 사업수입(서울의회보 민간광고수입) 등임.
 -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577만원으로, 변상금 및 위약금, 기타수입(기간제근로자 건강보험료 환급금,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 따른 세액공제액) 등임.
- 미수납액은 총 277만원으로 전액 이월하였으며, 그 내역은 변상금 및 위약금 등임.

3. 세출 결산

-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195억 2,523만원이고, 예산현액 또한 증감 없이 195억 2,523만원임.
- 이 중 예산현액 대비 96.6%인 188억 6,715만원이 지출되었고, 3.4%에 해당하는 6억 5,808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음.
- 세출에 대한 주요 사업별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의회운영 강화 및 의회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119억 9,300만원 중 117억 191만원을 지출하였음.
 - ‘의정활동의 적극홍보 및 정보화 사업’은 예산현액 38억 1,543만원 중 36억 9,617만원을 지출하였음.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사업’은 예산현액 25억 3,652만원 중 23억 8,491만원을 집행하였음.

4.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가. 예산의 이용·이체 및 변경사용 : 해당 없음.

나. 예산 전용은 총 3건 1,010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촉탁계약직(5명) 임금협상에 따른 차액분(1월~10월) 소급 지급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 ‘의회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사업’ 재료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550만원을 전용하였음.
- 해외비교시찰 및 해외자매도시 방문을 위한 중증장애의원 활동보조인력의 여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의 공공운영비와 ‘해외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사업’의 국외업무여비에서 민간인국외여비로 각각 400만원과 60만원을 전용하였음.

다.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라. 다음연도 이월액 : 해당 없음

5. 기금결산: 해당 없음

6. 채권현재액: 해당 없음

7.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15년도 말 의회사무처 소관 관리 공유재산은 872억 3,200만원으로,
 - 토지 3,638㎡, 822억 3,500만원이며 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대비 20억 2,800만원 증가하였고,
 - 건물 14,858㎡, 42억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대장가액 증가는 없음.
 - 기타는 태양광발전시설 및 지적 재산권으로 7억 6,200만원으로 증감분은 없음.

<표 1> 2015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4년도말 보유현황 | 당해연도 증감액 | | 2015년도말 보유현황 | |
|----------|-----------------|----------|-------|-----------------|--------|
| | | 증가 | 감소 | | |
| 합 계 | 85,205 | 2,028 | - | 87,233 | |
| 행정 재산 | 계 | 85,205 | 2,028 | - | 87,233 |
| | 공공용재산 | - | - | - | - |
| | 공용재산 | 85,205 | 2,028 | - | 87,233 |
| | 토지(3,638㎡) | 80,207 | 2,028 | - | 82,235 |
| | 건물(14,858㎡) | 4,236 | - | - | 4,236 |
| | 기타 | 762 | - | - | 762 |
| | 기업용재산 | - | - | - | - |
| | 보존재산 | - | - | - | - |
| 일반재산 | - | - | - | - | |

8. 물품 증가 및 현재액

- 2015년도 말 시의회사무처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수량 711개 이며, 전년 대비 1억 8,800만원 증가하여 현재액은 30억 7,800만원임.

<표 2> 2015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 | 2014년도말 보유현황 | 당해연도 증감액 | | | 2015년도말 보유현황 |
|----------|----|-----------------|----------|------|-----|-----------------|
| | | | 구매 | 관리전환 | 소계 | |
| 일반 회계 | 수량 | 690 | 21 | - | 21 | 711 |
| | 금액 | 2,890 | 188 | - | 188 | 3,078 |

Ⅲ.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세입 결산 검토

1) 총괄 검토

-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705만원으로, 726만원이 증액된 3,43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3,154만원을 수납(수납률 91.9%) 하였으며, 미수납액은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총 277만원임.
-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2,577만원으로, 「서울의회보」 민간광고수입 1,555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906만원) 및 기타사용료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577만원으로, 변상금 및 위약금, 그 외 수입임.

〈표 3〉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만원, %)

| 예산과목 (장/관/항/목)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A) | 수납액 (B) | 미수납액 | 수납률 (B/A) |
|-------------------|-------|--------------|------------|------|--------------|
| 합 계 | 2,705 | 3,431 | 3,154 | 277 | 91.9 |
| 세외수입 | 2,705 | 3,431 | 3,154 | 277 | 91.9 |
| 경상적세외수입 | 2,705 | 2,577 | 2,577 | - | 100 |
| 사용료수입 | 120 | 116 | 116 | - | 100 |
| 기타사용료 | 120 | 116 | 116 | - | 100 |
| 수수료수입 | 900 | 906 | 906 | - | 100 |
|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 900 | 906 | 906 | - | 100 |
| 사업수입 | 1,685 | 1,555 | 1,555 | - | 100 |
| 기타사업수입 | 1,685 | 1,555 | 1,555 | - | 100 |
| 임시적세외수입 | - | 854 | 577 | 277 | 67.5 |
| 과징금 및 과태료 | - | 848 | 571 | 277 | 67.3 |
| 변상금및위약금 | - | 848 | 571 | 277 | 67.3 |
| 기타수입 | - | 6 | 6 | - | 100 |
| 그외수입 | - | 6 | 6 | - | 100 |

- 최근 3년간 세입결산액 추이를 살펴보면, 실제수납액 비율은 평균 95%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세입징수실적을 보이나, 여전히 세입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미수납액도 증가추세에 있음(표 4 참조).

- 특히 2015년도에는 세입예산편성액보다 26.8% 높은 징수결정이 이루어져 세입 예산 추계의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최근 3년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결산 추이

(단위 : 만원, %)

| 구분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A) | 수납액 (B) | 미수납액 | 결손처분 | 다음연도 이월액 | 수납율 (B/A) |
|------|-------|-----------|---------|------|------|----------|-----------|
| 2015 | 2,705 | 3,431 | 3,154 | 277 | 0 | 277 | 91.9 |
| 2014 | 3,929 | 3,633 | 3,372 | 261 | 0 | 261 | 92.8 |
| 2013 | 2,855 | 2,575 | 2,575 | 0 | 0 | 0 | 100 |

2) 세외수입

- 세입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연구용역 1건에 대한 지체상금(457만원)¹⁾과 의원 노트북·PC 미반납으로 인한 변상금(390만 5천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임.
- 경상적 세외수입 중 서울의회보 민간광고수입(기타사업수입)은 「서울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세입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세입예산액에 비해 과소 수납하고 있고 그 차액도 증가추세에 있음.

<표 5> 최근 3년간 기타사업수입(민간광고수입) 예산액대비 징수결정액 현황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 2015년도 | | | 2014년도 | | | 2013년도 | | |
|---------|---------|-----------|----------|---------|-----------|----------|---------|-----------|----------|
| | 예산액 (A) | 징수 결정액(B) | 차액 (A-B) | 예산액 (A) | 징수 결정액(B) | 차액 (A-B) | 예산액 (A) | 징수 결정액(B) | 차액 (A-B) |
| 민간광고 수입 | 16,846 | 15,546 | 1,300 | 17,509 | 16,496 | 1,013 | 16,464 | 15,918 | 546 |

-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서울의회보 민간광고수입’과 같은 경상적 세외수입

1) ‘14년도 상반기 과제이며 당초 계약기간은 ‘14.5~8.이였으나, 2회 준공기한 연장을 통해 ‘14. 10월까지 연구기간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51일의 연구기간이 지체되어 457만원의 지체상금(‘15. 1. 22.)이 발생함.

은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한 수입이라는 측면에서 세수추계 오류가 반복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정밀한 세입예산 추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3) 미수납액

- 징수결정 후 미수납 된 세입예산은 의정활동 지원용으로 지급된 노트북·태블릿PC에 대한 미반납과 분실에 따른 변상금이며, 총 19건에 대해 390만 5천 원을 부과해 114만원을 수납하고 12건에 해당하는 276만 5천원이 미수납되었음(표 6 참조).
- 신형 노트북·태블릿PC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용제품의 관리와 반납에 철저를 기했어야 하나, 전년도(261만원)에 이어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미수납이 발생하였음.
-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공물품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하며,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된 미수납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세입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표 6> 최근 2년간 노트북·태블릿PC 변상금 현황

(단위 : 천원, %)

| 예산과목 | 2015년도 | | | 2014년도 | | |
|------------------|--------|-------|-----------------|--------|-------|-----------------|
|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미수납률)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미수납률) |
| 노트북·태블릿PC 변상금 | 3,905 | 1,140 | 2,765 (70.8) | 9,440 | 6,830 | 2,610 (27.6) |

2 세출 결산 검토

1) 총괄 검토

-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과 동일한 195억

2,523만원으로, 이중 96.6%인 188억 6,715만원을 지출하고, 6억 5,808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음.

- 최근 3년간 세출결산액 추이는 아래의 <표 7>과 같으며, 2015년에는 불용률이 전년대비 10.2% 포인트 감소(13.6%→3.4%)한 바,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표 7> 최근 3년간 세출결산 추이

(단위: 만원, %)

| 구분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용·전용 변경액 | | 예산현액 | 이월액 | 집행액 | 집행잔액 (불용률) |
|------|-----------|------------|--------------|-------|-----------|-----|-----------|-------------------|
| | | | 감 | 증 | | | | |
| 2015 | 1,952,523 | - | 1,010 | 1,010 | 1,952,523 | - | 1,886,715 | 65,808 (3.4) |
| 2014 | 2,152,590 | - | 5,143 | 5,143 | 2,152,590 | - | 1,860,465 | 292,124 (13.6) |
| 2013 | 2,513,724 | 95,931 | 1,360 | 1,360 | 2,609,656 | - | 2,434,014 | 175,642 (6.7) |

- 그러나 7월에 있었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통해 3억 8,340만원을 감액하지 않았다면, 불용률은 5.3%(10억 4천만원)로 증가함.
- 과다 불용발생문제는 예산 편성당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가 있었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향후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밀한 예산편성과 효율적 집행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2) 전용

- 의회사무처는 2015년 총 3건, 1,01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촉탁계약직(5명) 임금협상에 따른 차액분(1월~10월) 소급 지급과 중증장애의원의 해외비교시찰 및 해외자매도시 방문에 따른 활동보조인력의 국외여비 부족분에 사용되었음.

<표 8> 2015회계연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천원)

| 부서명 | 세부사업 | 통계목 | 예산액 | 전용금액 | | 승인 일자 | 사유 |
|-----------|----------------|---------------|---------|-------|-------|---------------|--|
| | | | | 감액 | 증액 | | |
| 의정 담당관 | 의회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 재료비 | 20,000 | 5,500 | - | 2015. 11. 18. | 촉탁계약직(5명) 임금협상에 따른 차액분(1월~10월) 소급지급 |
| | 의회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 155,726 | - | 5,500 | | |

| | | | | | | |
|-------------------------|---------|---------|-------|-------|-----------|---|
| 의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 공공운영비 | 515,020 | 4,000 | - | 2015.5.12 | 해외비교시찰을 위한 중증장애의원 활동보조인력 국외여비 전용 |
|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 민간인국외여비 | - | - | 4,000 | | |
|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 국외업무여비 | 140,000 | 600 | - | 2015.9.30 | 해외 자매도시 방문에 따른 중증장애의원 활동보조인력 국외여비 전용 |
|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 민간인국외여비 | 4,000 | - | 600 | | |

- ‘중증장애의원 활동보조인력의 국외여비’는 예산편성 당시 활동보조인력을 명
확히 확정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은 일부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임금협상결과(2015. 11)를 반영한 ‘축탁계약직 차액분’은 예산편성당시
임금인상 상승분을 예측 가능했고, 해당연도 임금협상을 연도 말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급 지급하는 현재의 제도는 매년 불필요한 전용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임금협상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예산운용의 탄력성과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예산의 전용이 가능하더
라도 예산의 편성단계에서 충분히 그 예측이 가능한 예산을 집행단계에서 전용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임.

3) 추경 후 과다불용사업

○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목적에서 감추경²⁾한 사업들의 불용률이 높은 것은
예산편성과 추경 과정에서 면밀한 사업계획수립과 집행실적분석이 부족했다
고 볼 수 있음(표 9 참조).

〈표 9〉 2015회계년도 추가경정예산 과다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 | 본예산 | 추경예산 | 예산현액 | 집행잔액 (불용률) | 불용사유 |
|------------------|--------|---------|--------|-----------------|------|
| 회의록 발간 | 30,330 | △3,026 | 27,304 | 1,466 (5.4%) | 집행잔액 |
| 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 71,560 | △10,000 | 61,560 | 5,939 (9.6%) | - |

2) 의회사무처는 2015년 7월에 추경을 통해 3억 8,340만원을 감액하고, 3억 6,830만원을 증액하여 총 1,510만원을 감액 편성한 바 있음(참고자료).

| | | | | | |
|--------------------|-----------|---------|-----------|------------------|---|
| 의정활동을 위한정책토론회 개최지원 | 0 | 31,600 | 31,600 | 4,647 (14.7%) | “ |
| 기본경비 | 1,277,324 | △97,030 | 1,180,294 | 96,133 (8.1%) | -직원국내여비 (65,690) -4급,5급 직책급 업무 추진비(17,353) |

- 회의록 발간(불용률 5.4%), 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불용률 9.6%), 기본경비(불용률 8.1%) 등은 감추경이 없었다면 불용률이 각각 14.8%, 22.3%, 15.5%로 비교적 높은 불용률을 보이게 됨.
- 또한, 의원들의 정책 수요폭중에 적기 대응하고자 정책토론회 예산 3,16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나 14.7%의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바, 향후 면밀한 사업성 검토와 적극적인 안내 등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4) 불용률 과다사업

- 예산의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사업 전(全)단계에서 요구됨.
-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중 불용률이 20%를 넘는 사업과 불용사유는 <표 10>과 같으며, 일부 예산절감 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예산편성과정에서 면밀한 사전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임.
- ‘국내 의정활동 교류’(불용률 33.2%),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불용률 53.41%)은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한 대표적 사업으로, 예산불용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동일한 불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표 10> 2015회계연도 20% 이상 불용액 발생 현황 및 불용사유

(단위: 천원, %)

| 예산 사업명 | 예산현액 | 집행잔액 (불용률) | 불용사유 |
|------------|---------|------------------|-------------------------------------|
| 국내 의정활동 교류 | 163,200 | 54,259 (33.2) | ·국내 머르스 발생으로 상임위원 임서미나 감소 등에 따른 미집행 |

| | | | |
|---------------------|---------|------------------|-------------------------------------|
| 의정활동지원가능 강화 직업연수 | 23,800 | 5,867 (24.7) | ·예산절감 |
|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 102,400 | 54,655 (53.4) | ·국내 메르스 발생으로 초청 교류 일정을 '16년으로 연기 |

5) 주요 사업별 검토

가. 국내 의정활동 교류

- ‘국내 의정활동 교류’는 전국 시·도의회 간 상호 교류활동과 상임위 세미나 참석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평균 28.5%의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표 11 참조).
- 2015년 불용률은 33.2%로 전년대비 22.8% 포인트(10.4%→33.2%) 증가했으며 주요사유는 국내 메르스 발생으로 상임위별 의원 세미나가 일부 취소되었기 때문임.
- 지방의회 부활이후 인사권독립, 보좌관제 및 인사청문회 법제화 등 지방의회 숙원과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광역의회 간 활발한 교류협력과 연대 활동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 교류를 통해 이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표 11> 최근 3년간 국내의정활동 교류사업 불용율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잔액 (불용률) | 불용사유 |
|------|---------|---------|-------------------|------------------------------|
| 2015 | 163,200 | 108,941 | 54,259 (33.2%) | ·상임위별 의원세미나 감소 등 에 따른 미집행 |
| 2014 | 82,200 | 73,620 | 8,580 (10.4%) | ·집행잔액 |
| 2013 | 133,800 | 77,828 | 55,972 (41.8%) | ·집행잔액 |

나. 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 자치법규와 의회 관련 법률사안에 대해 입법·법률 고문의 자문을 통해 의정 지원의 전문화와 의회 관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2015년도 예산현액 6,156만원 중 5,562만원을 집행하였음.

<표 12> 최근 3년간 입법·법률고문 운영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 본예산 | 추경예산 | 예산 변경 | 예산현액 | 집행잔액 (불용률) | 불용사유 |
|------|--------|---------|----------|--------|-------------------|-------------------------------------|
| 2015 | 71,560 | △10,000 | - | 61,560 | 5,939 (9.6%) | - 집행잔액 |
| 2014 | 76,330 | - | △4,956 | 71,374 | 27,005 (37.8%) | - 20명 고문을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실제 15명 운영) |
| 2013 | 52,300 | - | - | 52,300 | 2,376 (4.5%) | - 집행잔액 |

- 2015년도 불용률은 전년대비 28% 포인트(37.8%→9.6%) 감소한 9.6%로 호전된 집행실적을 보이나, 이는 입법·법률고문의 증원운영(15명→18명)과 1,000만원을 감추경 했기 때문이며, 당초예산 대비로는 22%의 높은 불용률을 보임.
- 의원 및 의회사무처의 입법·법률 자문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자문위원 수도 증가하고 있음에도(표 13 참조) 높은 수준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정확한 사업계획 검토가 부족했음을 보여줌.

<표 13> 최근 5년간 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 및 수행 현황

(단위 : 명, 건)

|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인원 | 10 | 10 | 10 | 15 | 18 |
| 자문의뢰건수 | 47 | 58 | 58 | 51 | 102 |
| 1인당 평균 자문건수 | 14.1 | 17.4 | 17.4 | 10.2 | 17 |

※ 각 건당 입법·법률고문 3명에게 자문 의뢰함.

-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연례 답습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예산불용 원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다음연도 예산삭감 등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제고해야 할 것임.

다. 의정활동 수행비 중 의원상해부담금

- ‘의정활동 수행비’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법정경비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상해부담금 등으로 구성됨.
- 이 중 ‘의원상해부담금’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³⁾ 등에 따라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⁴⁾.
- 그러나 2013년도와 2014년도 연속 편성예산 전액이 불용되었고 2015년도에 처음으로 2,400만원을 감추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6.8%의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표 14 참조).
- 의원의 사망·상해 등의 발생을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되나, 최근 3년간 높은 불용률을 볼 때 연례답습적인 기준에 따르기 보다는 예산편성기준의 하향 조정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표 14> 최근 3년간 의원상해부담금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 구분 | 예산액 | 본예산 | 추경예산 |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잔액 (불용률) |
|------|--------|--------|---------|--------|-----|-------------------|
| 2015 | 54,000 | 54,000 | △24,000 | 30,000 | 957 | 29,043 (96.8%) |
| 2014 | 54,000 | - | - | 54,000 | - | 54,000 (100%) |
| 2013 | 54,000 | - | - | 54,000 | - | 54,000 (100%) |

라. 의원 입법활동 지원 연구용역

- 지방자치의 발전과 불합리한 자치법규·제도 등의 개선을 통한 의원들의 입법·정책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

3)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4) 매년 예산 편성시 사망 1명분 【3,600만원(150만원×2년×12월)】 과 상해치료비의 상한액 1명분 【1,800만원(150만원×1년×12월)】 을 각각 반영해 책정하였음.

근 3년간 집행실적은 양호한 수준임(불용률 1.8%→1.1%→0.5%).

<표 15> 최근 3년간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 구분 | 예산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집행잔액 (불용률) |
|------|---------|---------|---------|-----------------|
| 2015 | 698,300 | 698,300 | 694,493 | 3,807 (0.5) |
| 2014 | 791,200 | 791,200 | 782,893 | 8,307 (1.1) |
| 2013 | 687,200 | 677,200 | 664,700 | 12,500 (1.8) |

- 그러나, 예산편성 당시의 사업목표 건수와 실제 집행건수 간에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낙찰차액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없는 과제 또한 수행하고 있어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정확한 사전수요조사와 단가 산정이 필요함.

<표 16> 최근 3년간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 목표건수 대비 추진현황

| 구분 | 사업목표건수 | 추진건수 |
|------|--------|-------------------|
| 2015 | 14건 | 22건 ⁵⁾ |
| 2014 | 14건 | 20건 |
| 2013 | 14건 | 19건 |

- 한편,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에 따르면 담당관으로 하여금 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용역보고서에 과제 제안 의원의 실명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8조).
- 그러나, 2015년도 연구용역보고서에 과제 제안 의원의 실명을 기재하지 않고 누락되어 있는 등 운영상의 일부 문제가 노출된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임.

5) 2015년도 추진건수 22건 중 2건은 낙찰차액발생으로 인한 과제임.

마. 기본경비

- ‘기본경비’는 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 부서 인원수와 조직 규모 등에 기준단가를 적용해 산출되며,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됨.
- 일반적으로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공통경비로 사용되는 예산의 특성상 높은 집행률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나, 최근 3년간 기본경비 불용률은 약 10% 내외를 보이고 있어 양호한 집행수준으로 볼 수 없음.
- 2015년도의 불용률은 8.1%로 전년대비 3.3% 포인트 낮게 나타났으나, 감추경(9,703만원)을 제외하면 불용률이 15.1%에 달해 전년도보다 높은 불용수준을 보였다.

<표 17> 최근 3년간 기본경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 구분 | 본예산 | 추경예산 |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잔액 (불용률) |
|------|-----------|---------|-----------|-----------|--------------------|
| 2015 | 1,277,324 | △97,030 | 1,180,294 | 1,084,161 | 96,133 (8.1%) |
| 2014 | 1,845,981 | - | 1,845,981 | 1,635,370 | 210,611 (11.4%) |
| 2013 | 1,824,552 | - | 1,824,552 | 1,647,587 | 176,965 (9.7%) |

- 기본경비의 세부항목별 불용률은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여비’가 21.2%로 가장 높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6.0%,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1.4%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8> 2015년도 기본경비 세부항목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 구분 | 본예산 | 추경예산 |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잔액 (불용률) |
|-------|-----------|---------|-----------|-----------|-----------------|
| 계 | 1,277,324 | △97,030 | 1,180,294 | 1,084,161 | 96,133 (8.1) |
| 사무관리비 | 557,772 | 52,070 | 609,842 | 607,991 | 1,851 (0.3) |
| 월액여비 | 11,592 | - | 11,592 | 11,447 | 145 (1.3) |

| | | | | | |
|-----------|---------|---------|---------|---------|------------------|
| 국내여비 | 395,400 | △52,000 | 343,400 | 270,760 | 72,640 (21.2)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85,380 | △61,100 | 24,280 | 24,149 | 131 (0.5) |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17,960 | - | 17,960 | 15,904 | 2,056 (11.4) |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64,620 | - | 64,620 | 62,662 | 1,958 (3.0) |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144,600 | △36,000 | 108,600 | 91,247 | 17,353 (16.0) |

- 이 중 ‘국내여비’는 2013년(불용률 28.9%), 2014년(불용률 34%) 모두 약 30%에 달하는 높은 불용률을 보인 항목으로, 2015년에는 전년대비 12.8% 포인트가 감소한 21.2%로 호전된 집행실적을 나타냈으나, 5,200만원을 감추경 했기 때문이며 당초예산 대비로는 31.5%(1억 2,460만원)의 높은 불용률을 보임.
 - 2015년 1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53명)의 신규채용으로 의회사무처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출장 수요도 이에 맞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불용률을 보인 점은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예산집행측면에서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가 부족했음을 보여줌.
- 또한 직위가 있는 과장급 이상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의 경우 감사원 감사결과⁶⁾에 따라 5급 공무원에 대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600만원을 감추경 했음에도 불구하고, 16.0%의 높은 불용률(1,735만원)을 보임.
 - 이는 예산편성당시 4급에 대한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정원 16명이 아닌 20명으로 과다계상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와 같은 단순한 인원수 산정오류는 시정되어야 할 것임.
- 향후 사후에 세출산정이나 추계에 있어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추경 또는 예산변경제도 등을 활용해 소액의 예산이라도 사장(死藏)시키기보다는 필요한 사업에 배정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 아울러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해 편성된 기본경비의 목적에 맞게끔 적

6) 의회사무처는 보조기관이 아닌 ‘직속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4급 공무원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일반직 5급 공무원에 대한 직책급업무추진비’에 관한 예산편성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4조제2호)」에 위반된다고 확정 통보한 바 있음. 이에 따라 ‘4급 공무원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110만원은 감추경 하였음.

정하게 집행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고 과다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바. 공유재산 및 물품증가액

- 2015년 의회사무처 공유재산 보유현황은 토지 822억 3,500만원, 건물 42억 3,600만원, 기타(태양광발전설비 및 지적재산권) 7억 6,200만원 등 총 872억 3,300만원(전년대비 20억 2,800만원 증가)이며 정수물품은 전년대비 21개가 증가한 711개로 집계됨.
- 그러나 2014년 결산 시 제출한 공유재산의 합계는 약 844억 4,200만원으로, 지적재산권 및 태양광발전설비가 미포함 되어 이를 포함한 실제 2014년 공유재산 합계는 852억 5백만원임(표 19 참조).
- 또한 정수물품의 개수를 당초 599개로 제출하였으나, 91개가 증가한 690개로 집계되며, 현재액은 27억 3천 6백만원에서 28억 9천만원으로 정정되었음.
- 향후,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유재산에 대한 보호와 관리·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표 19> 2014 회계연도 공유재산 및 정수물품 결산 정정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 2014년도 | | 2015년도 | |
|----------|--------|--------|--------|--------|
| | 당초 | 변경 | | |
| 공유 재산 | 토지 | 80,206 | 80,207 | 82,235 |
| | 건물 | 4,236 | 4,236 | 4,236 |
| | 기타 | 0 | 762 | 762 |
| | 계 | 84,442 | 85,205 | 87,233 |
| 정수 물품 | 수량 | 599 | 690 | 711 |
| | 금액 | 2,736 | 2,890 | 3,078 |

<참고자료>

2015회계년도 추가경정예산 세부사업별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 | 본예산 | 추경예산 | 예산변경 (전용) | 예산현액 | 집행잔액 (불용률) | 불용발생 사유 |
|---------------------------|-----------|---------|--------------|-----------|------------------|--|
| 회로록 발간 | 30,330 | △3,026 | | 27,304 | 1,466 (5.4%) | 집행잔액 |
| 의정운영지원 | 587,078 | 63,901 | | 650,079 | 23,331 (3.6%) | -초단시간 근로자인건비 4,082천원 -행사운영비 16,841천원 |
|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 29,000 | 19,798 | | 49,798 | 1,378 (2.8%) | 집행잔액 |
| 의원수첩제작 | 32,000 | △8,000 | | 24,000 | 101 (0.4%) | " |
|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 193,800 | 100,000 | | 293,800 | 4,389 (1.5%) | " |
| 의정활동 수행비 | 8,576,365 | △94,567 | | 8,481,798 | 91,112 (1.1%) | " |
| 의회청사유지관리 | 1,221,622 | △40,000 | | 1,181,622 | 57,330 (4.9%) | -공공운영비 38,576천원 |
| 의회 청사방호 및 청사관리 | 239,235 | 25,000 | | 264,235 | 3,191 (1.2%) | 집행잔액 |
| 의회정보화지원 | 306,559 | 128,000 | | 434,559 | 14,289 (3.3%) | " |
| 본회의장 전광판 영상표출시스템 | 385,000 | △28,090 | | 356,910 | 7,402 (2.1%) | " |
| 의회 홍보촬영장비 관리 | 74,760 | △3,055 | | 71,405 | 136 (0.2%) | " |
|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 186,000 | △41,000 | | 145,000 | 0 (0%) | " |
| 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 144,312 | △5,326 | | 138,986 | 4 (0%) | " |
| 의회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 | 524,480 | △32,511 | △4,000 | 487,969 | 2,367 (0.5%) | " |
| 의회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보고서 발간 | 64,800 | △2,094 | | 62,706 | 1,292 (2.1%) | " |
| 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 71,560 | △10,000 | | 61,560 | 5,939 (9.6%) | " |
|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지원 | 0 | 31,600 | | 31,600 | 4,647 (14.7%) | " |
| 기본경비 | 1,277,324 | △97,030 | | 1,180,294 | 96,133 (8.1%) | -직원국내여비 65,690천원 -45급직책급 업무추진비17,363천원 |